채무조정 요청서

□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
□ 채무조정 요청대상

채권금융회사	대출일자	잔액(원)
분당정자전당포 한국수입명품감정원대부		

□ 채무조정 요청사유

실직	폐업	질병 및 사고	소득 감소
□	□	□	□
기타			
□ ( )			

□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◇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◇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
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◇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◇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
◇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1.채무조정요청서 2.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3.채무조정안 4.변제능력 입증자료
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,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분당정자전당포 한국☎031-604-3[illegible]0**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□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(인)